

의안번호	2115036
의 퇴 인	이종배 의원
회 답 일	2022.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비용추계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036)

비용추계서 요약

I. 재정수반요인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안 제16조의2제1항)
 - (현행) 연간 5천만원 → (개정안) 연간 2억원
 - (~2021년) 연간 3천만원

II. 비용추계 결과

- 재정수입 변화: 향후 5년간 총 3,855억원(연평균 771억원) 감소

[표]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3~2027년

(단위: 억원)

[illegible]

차 례

I. 비용추계 결과	1
II. 재정수반요인	1
III. 비용추계의 전제	2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3

일러두기

-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I. 비용추계 결과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5천만원 → 2억원)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2023년 771억원 등 5년간 3,855억원(연평균 77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3~2027년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2026	2027	누적액	연평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안 제16조의2제1항)	-771	-771	-771	-771	-771	-3,855	-771

II. 재정수반요인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안 제16조의2제1항)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항은 벤처기업의 임직원 등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연간 5천만원 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 기존 비과세 한도는 연간 3천만원이었으나, 2021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연간 5천만원으로 상향됨
 - 개정안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Ⅲ. 비용추계의 전제

- 본 개정안이 2022년 중 통과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2023년부터 2027년의 기간에 대하여 추계
 - 2022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는 2023년부터 발생(징수기준)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여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나, 세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에 발생
- 추계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2020년 귀속소득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행사 당시의 주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이 결정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일관된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워 2020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대상자가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제
-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중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소득 자료를 활용하되,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
 -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추계
- 동일한 총급여 구간에 속한 경우 1인당 평균 과세소득 및 결정세율이 동일한 것으로 전제
- 1인당 세수효과는 총급여 구간별로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전환 소득 - 현행법에 따른 비과세 전환 소득) × 결정세율로 도출
 - 비과세 한도 상향 시 기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소득 중 일부가 비과세된다는 점을 활용
 - 다만, 2020년 귀속소득의¹⁾ 경우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이었으나, 현행법은 2021년 세법개정에 따라 5천만원, 개정안은 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대비 개정안의 세수효과 도출 필요
 - 총급여 규모별 실효세율은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의 비율로 산출
- 총 세수효과는 총급여 구간별 인원 1인당 세수효과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도출

1) 최근 통계인 2021년 국제통계연보는 2020년 귀속소득을 대상으로 함

□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 (기존 과세소득 중 비과세 전환분 도출) 2020년 귀속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과세소득이 비과세로 전환되는 부분 도출

-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과세소득이 비과세 소득으로 전환되는 부분 산출
 - － 기존 비과세 한도는 연간 3천만원, 2021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연간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개정안은 연간 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표 2] 2020년 귀속 총급여 규모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소득 신고 현황 및 비과세 전환분
(단위: 명, 백만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과세소득					
총급여 규모	2020			현행 한도에 따른 비과세 전환분 ($D = \min(C, 2\text{천만원})$)	개정안 한도에 따른 비과세 전환분 ($E = \min(C, 1\text{억7천만원})$)
	인원(A)	금액(B)	1인당 과세소득 ($C = B/A$)		
합계	11,984	888,570	74	—	—
1천만 이하	—	—	—	—	—
1.5천만 이하	2	0	—	—	—
2천만 이하	14	63	4.5	4.5	4.5
3천만 이하	63	229	3.6	3.6	3.6
4천만 이하	316	757	2.4	2.4	2.4
4.5천만 이하	195	533	2.7	2.7	2.7
5천만 이하	258	748	2.9	2.9	2.9
6천만 이하	669	2,777	4.2	4.2	4.2
8천만 이하	1,362	9,993	7.3	7.3	7.3
1억 이하	1,549	15,599	10.1	10.1	10.1
2억 이하	4,558	105,885	23.2	20.0	23.2
3억 이하	1,522	106,083	69.7	20.0	69.7
5억 이하	895	121,443	135.7	20.0	135.7
10억 이하	413	153,526	371.7	20.0	170.0
10억 초과	168	370,932	2,207.9	20.0	170.0

주: 1) 결정세액이 있는 자에 대한 현황임

2) 비과세 한도 3천만원을 초과하여 과세소득에 포함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금액을 의미
출처: 국세통계연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IV(4-2-4)를 바탕으로 작성

- [현행] 2020년의 비과세 한도는 3천만원이나, 현행법(2022.1.1. 시행)의 비과세 한도인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추가 한도인 2천만원 범위 내에서 2020년 기준 과세소득이 비과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계
 - 총급여 1억원 이하 구간까지는 2020년 기준 과세소득 전부가 비과세되나, 1억원 초과구간부터는 추가 비과세 한도인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전환
- [개정안] 2020년의 비과세 한도는 3천만원이나, 개정안의 비과세 한도 2억원 적용 시 추가 한도인 1억 7천만원 범위 내에서 2020년 기준 과세소득이 비과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제
 - 총급여 5억원 이하 구간까지는 2020년 기준 과세소득 전부가 비과세되나, 5억원 초과구간부터는 추가 비과세 한도인 1억 7천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전환

□ (실효세율) 총급여 구간별 실효세율 산출

- 총급여 규모 구간별 실효세율은 총급여액 대비 결정세액의 비율에 해당
 - 단, 총급여 1천 5백만원 이하 구간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과세소득 신고 금액이 없으므로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함

[표 3] 2020년 귀속연도 총급여 규모별 총급여, 결정세액 및 실효세율

(단위: 명, 백만원, %)

항목	총급여(과세 대상 근로소득)		결정세액		실효세율
총급여 규모별	인원(A)	금액(B)	인원(C)	금액(D)	(E=D/B)
1천만원 이하	20	92	20	17	-
1.5천만원 이하	189,183	2,706,366	189,183	2,110	-
2천만원 이하	848,659	15,005,712	848,659	54,857	0.4
3천만원 이하	2,908,057	71,694,441	2,908,057	531,350	0.7
4천만원 이하	2,003,498	69,866,178	2,003,498	1,153,686	1.7
4.5천만원 이하	856,293	36,355,205	856,293	913,842	2.5
5천만원 이하	760,235	36,083,498	760,235	1,111,190	3.1
6천만원 이하	1,228,720	67,352,203	1,228,720	2,634,202	3.9
8천만원 이하	1,616,925	111,914,136	1,616,925	6,090,736	5.4
1억원 이하	913,453	81,053,609	913,453	6,600,104	8.1
2억원 이하	804,447	102,487,670	804,447	13,693,542	13.4
3억원 이하	68,247	16,264,597	68,247	3,722,618	22.9
5억원 이하	28,446	10,618,062	28,446	2,926,923	27.6
10억원 이하	10,566	7,050,346	10,566	2,256,715	32
10억원 초과	3,414	6,641,921	3,414	2,472,166	37.2

주. 결정세액이 있는 자에 대한 현황임

출처: 2021년 국세통계연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4-2-4)를 바탕으로 작성

- (세수효과 추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5천만원 → 2억원)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2023년 771억원 등 5년간 3,855억원(연평균 77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1인당 세수효과 및 총 세수효과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표 5] 참고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3~2027년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2026	2027	누적액	연평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안 제16조의2제1항)	-771	-771	-771	-771	-771	-3,855	-771

[표 5]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5천만원 → 2억원)

(단위: 명, 백만원, %)

총급여 규모별	2020년 귀속 소득 신고 현황 (비과세 한도: 2020년 기준 3천만원)			1인당 세수효과 (비과세 한도: (현행) 5천만원, (개정안) 2억원)				총 세수효과 (H=A×G)
	인원(A)	금액(B)	기존 과세소득 (C=B/A)	현행법에 따른 비과세 전환분 (D= min(C, 2천만원))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전환분 (E= min(C, 1억7천만원))	실효세율(F)	추가 소득세 감소분 (G=(E-D)×F)	
1천만원 이하	—	—	—	—	—	—	—	—
1.5천만원 이하	2	0	—	—	—	—	—	—
2천만원 이하	14	63	4.5	4.5	4.5	0.4	—	—
3천만원 이하	63	229	3.6	3.6	3.6	0.7	—	—
4천만원 이하	316	757	2.4	2.4	2.4	1.7	—	—
4.5천만원 이하	195	533	2.7	2.7	2.7	2.5	—	—
5천만원 이하	258	748	2.9	2.9	2.9	3.1	—	—
6천만원 이하	669	2,777	4.2	4.2	4.2	3.9	—	—
8천만원 이하	1,362	9,993	7.3	7.3	7.3	5.4	—	—
1억원 이하	1,549	15,599	10.1	10.1	10.1	8.1	—	—
2억원 이하	4,558	105,885	23.2	20.0	23.2	13.4	0.4	1,954.5
3억원 이하	1,522	106,083	69.7	20.0	69.7	22.9	11.4	17,322.3
5억원 이하	895	121,443	135.7	20.0	135.7	27.6	31.9	28,580.2
10억원 이하	413	153,526	371.7	20.0	170.0	32.0	48.0	19,824.0
10억원 초과	168	370,932	2,207.9	20.0	170.0	37.2	55.8	9,374.4
합계							147.5	77,055.4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
과	장 박 연 서
추계세제분석관	백 수 연
연 락 처	02-6788-4745
	sooyeon21@na.go.kr
